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8.3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8.3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 약무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다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한국병원약사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행정사무관 전하늬 보험약제과장 전결 2022.8.31. 오창현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3171 (2022. 8. 3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1 팩스번호 044-202-3920 / [jeonhaney@korea.kr](mailto:jeonhaney@korea.kr) / 대국민 공개